

충남도립대학교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생 추천 세칙

제정[2005.07.29. 규정 제141호]	개정[2006.05.15. 규정 제190호]
개정[2007.05.28. 규정 제202호]	개정[2007.08.24. 규정 제218호]
개정[2008.07.28. 규정 제232호]	개정[2009.08.20. 규정 제248호]
개정[2009.09.15. 규정 제251호]	개정[2010.08.24. 규정 제267호]
개정[2011.06.08. 규정 제278호]	개정[2014.11.07. 규정 제342호]
개정[2015.01.09. 규정 제431호]	개정[2015.02.16. 규정 제439호]
개정[2015.08.20. 규정 제455호]	개정[2017.04.20. 규정 제510호]

제1조(목적) 지방공무원법 제27조(신규임용) 및 제41조의4(장학금 지급),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3조(임용시험 등),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임용 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제7조(선발방법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학생의 추천기준) ①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의 추천(이하 “임용 후보자장학생”이라 한다)은 “지방공무원법(법률) 및 지방공무원임용령(대통령령)”, 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(대통령령)”, “충청남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(도 규칙)”을 적용한다.

② 임용후보자장학생 추천 순위는 본교 재학생으로 3학기를 마친 학생(작업치료과는 5학기) 중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학과성적 및 모의고사 성적, 선발고사 성적, 자격증 가산점을 합산하여 결정하고 선발고사 응시자격은 재학 중 1회로 한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다.<개정 2015.8.20.>

1. 심화학습실 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입실자 또는 제15조의 1의 규정에 의한 퇴실자. <개정 2015.2.16.>

2. 기술직렬 학과(건설정보과, 환경보건과, 컴퓨터정보과, 작업치료과에 한함)의 경우 선발고사 공통과목(국어, 영어, 한국사)별 관련 개설교과목 2회 미만 이수자(2014년 재학생 및 복학생부터 적용) 단, 해당 학과의 휴·복학 및 방학 중 현장실습에 따른 이수 횟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<신설 2015.1.9.>

구 분	예외 조건	추천 충족 인정
공통 (건설정보과, 환경보건과, 컴퓨터정보과)	- 2014학년도(2014학번 포함)이전 휴학생의 2학년 1학기 복학	- 2학년 1학기 복학 후 개설되는 개설교과목 1회 이수 단, 현장실습으로 이수가 불가할 경우 이수로 인정
	- 2014학년도(2014학번 포함)이전 휴학생의 2학년 2학기 복학	- 강좌 미개설로 충족으로 인정
작업치료과	- 2014년 2학년 재학 중이거나 2014학년도 (2014학번 포함)이전 휴학생의 2학년 2학기 복학 - 3학년 1학기 복학하는 경우 ※ 필수 현장실습과정이 2학년 2학기 동계 방학 중에 이수해야 함	- 3학년 개설교과목 1회 이수로 인정
	- 2014학년도(2014학번 포함)이전 휴학생의 3학년 2학기 복학	- 강좌 미개설로 충족으로 인정

제3조(장학생의 추천절차) ① 임용후보자장학생의 추천은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이를 사전 홍보하고 장학생 추천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를 총장이 추천한다.<개정 2014.11.7.>

② <삭제 2014.11.7.>

제4조(추천기준에 따른 배점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추천기준에 따른 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고, 총점은 각항의 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.

1. 자치단체 선발공고일 이전학기까지 성적 환산점수는 [별표 1]의 성적 반영비율과 같다. 다만, 선발기준은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충남도립대학

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방침을 따른다. <개정 2008.7.28, 2009.8.20, 2011.6.8, 2014.11.7, 2015.01.00>
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의 가산점수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의2(신규임용시험의 가점)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55조의3(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)과 「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」 제13조의3(신규임용시험의 특전)의 규정과 관련한 [별표 7의 2 :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], [별표 7의3 :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], [별표 7의4 : 신규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] 규정을 준용하며 소방직의 경우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0조(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방법),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42조(채용시험의 특전) 제1항, 「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」 제24조(채용시험의 특전)의 규정에 의한 [별표6 :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] 규정의 가점 비율은 준용하되 가산점 인정 자격증은 본 규정 [별표4]에 열거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한다. 다만, 선발공고일 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55조의3 및 「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」 제13조의3 규정과,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42조(채용시험의 특전) 제1항의 규정에 있는 필기시험은 본 규정에 의한 선발고사로 본다.<개정 2009.8.20., 2014.11.7.>

3. <삭제 2014.11.7.>

제5조(선발고사) <신설 2009.8.20.>

①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고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20일

전까지 학과별로 통보하고, 또한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학 홈페이지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응시자격
2. 시험과목 및 배점
3. 시험방법, 시험일시와 시험장소
4. 성적 통보 시기 및 통보방법
5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
6.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제반사항 <개정 2014.11.7.>

② 시험과목은 충청남도가 수립한 충남도립대학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방침에 따른다. <개정 2014.11.7., 2015.01.00>

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모의고사 등) 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11.7.>

② 모의고사 시험과목은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과목을 준용하여 공통과목은 국어, 영어, 한국사로 하고, 전공과목은 각 직렬별 시험과목으로 하되 교과운영상 개설되지 않은 전공과목은 모의고사 운영방침에 의거 모의고사 시험과목 적용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행정직렬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치행정과, 경찰행정과 선택과목은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46조제4항에 따라 행정학, 행정법으로

하고, 소방직렬은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44조[별표5]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으로 한다.<개정 2015.8.20.>

③ 기타 모의고사 추진시기, 회수, 문제출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의 모의고사 운영방침에 준용한다. <개정 2014.11.7.>

④ <삭제 2014.11.7.>

제7조(인정가산) ① <삭제 2014.11.7.>

② 자격증 가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7.28., 2014.11.7.>

③ 능력인증시험점수 가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 능력인증시험점수는 현행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차등 부여한다.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차등	TOEFL			TOEIC	TEPS	G-TELP (level:2)	FLEX	가산점
	PBT	CBT	IBT					
기준	530	197	71	700	625	65	625	3
약 85%	450	165	60	600	530	55	530	2
약 70%	370	135	50	500	435	45	435	1

제8조(성적우수 장학생과의 관계) 학과별 성적우수 장학생 중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미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4.11.7.>

제9조(당연제외자) 임용후보자장학금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제외한다.

1.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
2. 충남도립대학교학생상벌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자<개정 2014.11.7, 개

정 2015.01.00>

3. 삭제 <2008.7.28.>

4. 전과 및 편입학자, 야간과정 재학자 <개정 2007.8.24., 2014.11.7.>

제10조(실무교육) <신설 2014.11.7.>

①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되어 도 및 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(공채합격자는 희망자에 한함)는 공무원으로서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.

② 실무교육은 학생지원처가 주관하고 교육기간은 6주 이하, 교육내용은 직무소양과 행정실무로 구성하여 실시한다.

③ 임용후보자장학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인정여부는 공채지원운영위원회 심의·결정에 의한다.

④ 실무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이 매년도 수립하는 실무교육 운영방침에 준용한다.

⑤ 수업상태 불량 등 교육평가결과가 저조한 수강생은 1년간 임용유예 및 재교육을 실시한다.

제11조(기타규정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채지원운영위원회 심의·결정에 따른다. <개정 2014.11.7.>

부칙 (규정 제141호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규정) 본 규정 발령이전 기숙사 입사생으로 사생규칙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칙 (규정 제190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규정 제202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규정 제218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규정 제232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(졸업예정자)부터 적용한다.

부칙 (규정 제248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251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267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278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342호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했던 가감점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. 단 3년제 학과인 작업치료과 보건직렬에 한하여 2014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- ③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충청남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등 실무수습 규정」(2007.1.9. 규정 제196호)는 폐지한다.

부칙 (규정 제431호)

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규정 제439호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규정 제431호 공고일 이전(공고일 포함)에 재학생 및 휴·복

학생에게 발생했던 미입실, 퇴실, 결석, 지각 등의 조치결과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추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칙 (규정 제508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08.7.28., 2009.8.20., 2011.6.8., 2014.11.7.>

성적 반영비율

구 분	모의고사 성 적	학과성적 (학 점)	선발고사	총 점
충청남도 및 시.군	20	30	50	100

※ 총 점 = 학과성적(학점) + 모의고사성적 + 선발고사성적 + 가산점

< 학점 환산 및 모의고사 환산 방법 >

가. 학점 환산방법 : 취득학점 평균(4.5점 만점) × 22.22 × 0.3 + 0.004

나. 모의고사 점수 환산방법 : 전체 모의고사 평균(100점 만점) × 0.2

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의 가산점

: 본 규정 제4조제1항 제2호 적용

[별표 2] 삭제<2014.11.7.>

[별표 3] 삭제<2008.7.28.>

[별표 4] <신설 2009.8.20.>

소방직 자격증 가산점 인정 자격증

구 분	자 격 증	비 고
기 사	소방설비기사(기계 또는 전기)	
	산업안전기사	
산업기사	소방설비산업기사(기계 또는 전기)	
	위험물관리산업기사	
	산업안전산업기사	